

수 신 : 정회원사

참 조 :

제 목 :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염태영, 더민주, 국토교통위원회, 의안번호 2216696, ' 26. 2.10)이 발의되어 안내하오니, 회원사께서는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26. 3.16.(월)까지 사무처로 제출 (FAX 032-428-7334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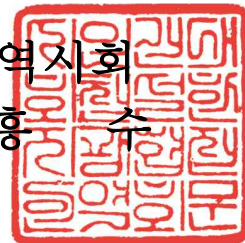
□ 주요내용

- 지자체 관리·감독 권한 확대(안 49조)
 - 관내에서 시공중인 관외 등록 업체의 불법하도급에 대한 조사 권한 추가
- 하도급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(안 82조)
 -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 위반시 최대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30%→ 60%로 상향

- 붙 임 1. 건설산업기본법 개정(안) 1부.
2. 의견 제출양식 1부. 끝.

※ 붙임 문서는 우리협회 홈페이지(incheon.kosca.or.kr) - 협회공문 참조바랍니다.

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
회 장 조 홍 수



담당자 사원 최현탁 과장 김주현 부장 계박사 실장 문승주

시행 전건협 인천 제170호(2026. 3.11)

우 21574/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38 4층(구월동, 전문건설회관) <http://incheon.kosca.or.kr>

전화 032-428-7331 / 전송 032-428-7334 / 전자우편 qrt9373@kosca.or.kr